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채무조정안 확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 기준 변경〉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89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24.

다.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 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기준을 채권 총액으로 하고 있어 고금리 채권 또는 장기연체 채권처럼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원금 대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우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채권 총액 기준에 따라 동의 권한을 부여받은

고금리 대부업체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 및 채권자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 감수한 손실 위험인 원금에 상응하도록 채무조정안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이에 채무조정안 확정 절차가 채권 총액 기준에서 채권 원금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채무자가 그에 부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5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안 확정 절차에서 채권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기준을 현행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 ④ (생략)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u>총액</u>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 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u>총액</u>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⑤ ----- ----- <u>원금</u> ----- ----- ----- ----- <u>원금</u> -----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에 따라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 중임.
- 위원회가 채무조정 신청자의 재무상황 등을 심사하여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¹⁾에게 통지하

면,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를 거쳐 해당 채무조정안이 확정됨²⁾.

- 또한 구체적으로,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 기준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1) “채권금융회사등”: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채무조정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채무조정안 확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자 동의요건이 채권의 ‘원금’ 기준이 아닌 채권의 ‘총액’ 기준, 즉 채권 원금 외에 (연체) 이자 및 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고금리 또는 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대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존재함.

○ 이에 개정안은 채무조정안 확정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요건을 채권 총액이 아닌 채권 원금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채무관계 성립 당시 감수하였던 손실 위험에 상응하는 동의권을 보유하도록 하고 취약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채무조정안 동의 기준을 현행과 같이 채권 ‘총액’ 기준으로 할 경우 제1금융권인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에게 채무 원금 대비 높은 수준의 동의권이 부여되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채무조정 거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2024년도 업권별 개인채무조정 동의 현황]

(단위: 건)

구분	은행	카드사	보증기관	상호저축	대부업	기타	합계
부동의율	2.2%	0.5%	2.3%	1.9%	12.3%	5.6%	4.6%
부동의 건수	4,557 (4.8%)	2,524 (2.7%)	4,115 (4.3%)	2,902 (3.1%)	48,131 (50.8%)	32,449 (34.3%)	94,678 (100%)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기준 대부업체의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12.3% 수준으로, 이는 금융업권 전체 부동의 건수 중 50.8%에 이르는 비중임.
- 그런데 고금리·장기연체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는 상대적으로 취약금융계층일 가능성이 높은바, 대부업체 등의 채무조정 거절 시 고강도의 추심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비용 및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존재함.
- 또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 감수한 손실 위험은 채무 총액이 아닌 채무 원금에 상응한다는 전제 하에, 채무조정안 확정에 대한 동의권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 원금에 비례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간 형평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존재함³⁾.

□ 한편, 채권의 원금 대비 총액(원금+이자+비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상환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3) 금융위원회 의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즉, 고금리 채권의 경우 당초 채권채무관계 성립 시부터 동일 규모 원금에 대한 저금리 채권에 비해 채권금융회사등이 더 높은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한 측면 역시 존재하므로, 고금리·장기연체 채권 보유자에 대하여 채무조정 시 더 강화된 동의권을 부여하여야 할 측면 역시 존재한다고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현행 의결권(동의권) 산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채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에게 과도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채무조정 거절 시 취약계층인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어 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효성을 저해하고, 채무 총액 기준 의결권 산정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한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에게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채권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8